

스웨덴 여성의 정치참여와 복지민주주의:

한국의 양성평등정치화를 위한 제안

1. 들어가는 말
2. '바르안난 다메르나스' 진후의 제도적 접근
3. 정치경제활동과 여성참여
4. 여성대의성과 정당의 역할
5. 여성정치선진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

1. 들어가는 말

2006년 총선거 이후 구성된 스웨덴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세계에서 최고수준인 47.3 퍼센트에 이른다.¹ 2007년 1월 세계의원연맹인 IPU가 조사한 자료와 비교해 볼 때 세계 민주주의국가 의회의 여성의원비율이 17.2 퍼센트에 이르는 것을 감안하면 매우 높은 수준이다.² 현재 1995년 UN 북경여성회의의 목표인 30% 이상의 여성의원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는 현재 스웨덴을 포함 19개국에 이른다.³

여성이 정치에 차지하는 비율을 측정하는 또 하나의 지표인 여성장관의 비율이 1990년대 중반 이후 22명의 장관직 중에서 11명으로 50%를 차지해 왔다. 이 전통은 2006년 새로 입각한 우익정권하에서도 계속 이어져서 22명의 장관 중 여성이 10명을 차지함으로써 스웨덴정치에서 차지하는 여성의 비중이 매우 높다. 그것도 구색을 갖추기 위한 상징적인 의미로 여성장관비율을 높인 것이 아니라 중요한 정책분야인 외교, 통상, 법무, 사회복지 분야에 지속적으로 여성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정치에서 여성의 무게를 실감하게 한다.⁴

중앙정치수준에서 뿐 아니라 지방정부에서의 여성의 역할은 두드러진다. 광역자치의회에서 여성의 비율은 47.5 퍼센트로 중앙의회의 여성의원비율과 필적하는 높은 수준이다. 기초자치의회에서 여성비율은 42 퍼센트로 약간 낮지만 국제적 기준으로는 매우 높은 수준이다. 중앙정치에서부터 지방정치에 이르기까지 주로 여성의원 들은 전통적 여성의 역할이었던 육아, 교육, 가정 등의 재창출 (Re-creational)

¹ 스웨덴의 선거관리기관의 웹 사이트.

<http://www.val.se/val/val2006/valdaled/stat_start.html>. 2007-11-18.

²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website, <<http://www.ipu.org>>. 2007-11-19.

³ Larsrud & Taphorn, 2007, 4 페이지.

⁴ 2006년의 조각에서 재무부장관, 유럽장관, 문화부장관, 통상부장관, 건설교통부장관, 국제원조부장관, 사회복지부 장관, 건강보험부장관, 국민통합부-양성평등부장관 등이 여성으로 임명되었다.

영역의 상임위원회에 주로 포진되어 활동을 하고 있다. 여성의 다양한 수준에서의 정치참여는 결국 지속적 국가발전과 운영에 있어 매우 중요한 축을 형성하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의 양성평등정치는 소위 '두명당 한명꼴로 여성을'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르안난 다메르나스(Varannan damernas)'로 대표된다. 이 용어는 '1970년대까지 구축된 복지제도를 기조로한 가정내에서의 양성평등적 구조를 정치 및 사회전반에 파격적으로 영향을 미친 다양한 정책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 국가보고서의 제목인 '바르안난 다메르나스'는 스웨덴 양성평등 정책의 상징으로 1990년대 들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양성평등국가를 지향하기 위한 국가적 목표로 자리 잡은 후 현재까지 스웨덴의 모든 정책분야에 필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스웨덴이 이같이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양성평등국가로 자리잡게된 정치사회적 배경은 무엇이었을까? 복지제도의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증진이 어떻게 양성평등국가 실현으로 나아가게 되었는가? 또한 '바르안난 다메르나스'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며 파급효과는 무엇인가? 이 글에서는 신제도주의적 시각에서 사회의 통념, 이상, 가치체계 등을 정치적 개혁과 제도개선을 통해 자리잡게 된 배경에 대해 알아보려 한다. 또한 스웨덴의 논의를 바탕으로 우리나라가 양성평등사회로 이양하기 위한 어떤 정치적 개혁과 절차가 필요한지 몇 가지 제안으로 이 글을 마무리하기로 한다.

2. '바르안난 다메르나스' 전후의 제도적 접근

스웨덴에서 여성의 참정권이 이루어진 1919년 이후 1970년대까지 여성문제가 정치사회적 관심을 받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있었다. 1970년대까지 무성의 정치(sexless or genderless politics)가 가능했던 것은 당시까지 여성의 전통적 역할에 대한 통념적 정의가 지배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즉 여성은 단지 가정에서 출산, 육아, 가사, 남편의 내조와 같은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의 일원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았다.

스웨덴에서 여성관련 정책이 개별적 복지정책의 일부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 사민당의 정치적 역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1968년 선거에서 의회 과반수를 획득한 사민당은 에르란데르 수상이 과반수를 차지해 사민당의 복지정책에 힘을 실어주자, 곧 바로 40대 젊은 기수 팔메에게 권력을 이양하면서 정치에 새로운 활력을 주고자 했다. 먼저 팔메수상은 개각에서 에르란데르 수상에 의해 임명된 2인의 여성 장관을 유임했다. 뫼르달 (Alva Myrdal) 과 오드노프 (Camilla Odnoff)는 각각 종교부 장관과 가정복지부 장관으로 임명되어 여성의 중앙정치참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스웨덴에서 당시 여성의 의회정치참여 수준이 이미 20퍼센트를 넘고 있었으나 여성장관은 매우 드문 경우였기 때문이다. 여성장관 임명을 기폭제로 이후 꾸준히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이 입안되기 시작했다.

사민당정권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면서 새롭게 야기되는 여성의 실질적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꾸준히 늘어나면서 가정내 여성의 경제적 독립권을 인정해야하는 사회적 요구에 답하기 위해 1971년 세금 연말정산을 여성과 남성이 독립적으로 하도록 결정했다. 이는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촉진시키고 가정에서의 남성의 의존관계를 끊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주었다.

또한 여성의 경제적 독립권을 보장해 줌으로써 여성이 쉽게 노동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게 해 줌으로서 고급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라는 부수적 결과도 얻을 수 있었다. 그 이전에는 여성이 직장생활을 통해 창출되는 수입은 가정의 수입으로 산정되어 남성의 수입에 더욱 의존적이었던 스웨덴 가정의 경제에 여성의 역할은 단지 보조적 수단으로 인정되고 있었던 점을 감안한다면 여성의 독립적 세금정산을 할 수 있도록 세제를 개혁함으로써 여성의 가정내에서의 지위를 상승시키는 결과를 맺었다.

여성의 경제적 독립을 세제적으로 인정한 그 다음 해인 1972년에는 스웨덴 최초로 수상직속으로 양성평등대책위(Delegation for Gender Equality)를 정부내에 두고 여성의 권익신장을 위한 정책제안과 연구를 총지휘하는 역할을 부여했다. 이는 점차 여성의 사회참여가 확대되면서 여성의 전통적 역할이었던 출산, 육아, 가정노동 등이 사회적 논쟁으로 등장하면서 정부에서는 가정내에서의 여성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했기 때문이었다.

1960 대까지 복지정책의 여성에 대한 접근법은 가정내에서의 전통적 역할에 기초한 시각이 중요한 잣대가 되었으나, 1970년대 들어 여성을 사회의 한 축으로 인정하여 가정문제를 보아야 한다는 시각이 시민당내에서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특히 진보적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팔메수상은 사회내 소수세력의 권익보호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성을 사회의 소외계급으로 인식하고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적극적으로 접근하고자 했다. 따라서 팔메수상이 임명한 양성평등 특별위원회는 여성의 문제를 단편적 정책분야로 보지 않고 정부의 전 부처가 함께 고민하고 연구해야 할 포괄적 복지정책사안으로 보고 변화된 사회에서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연구와 정책제안하도록 임무를 부여했다.

1972년 임명한 양성평등대책위의 권고에 따라 시민당은 1974년 가정복지제도의 중요한 획을 긋게 된다.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의 출산 이후 육아와 가사는 당연히 여성의 전유물이었으나, 남성도 함께 육아, 가사 등의 가정내 노동까지도 의무적 역할을 도입하게 되었다. 즉 1974년의 부보양육휴가제도는 당시까지 여성에게만 주어졌으나 여성이 출산이후 오랫동안 가정에 머물게 되면서 직장내에서 연속성의 상실과 재 적응등의 문제가 부각되면서 출산과 육아를 위해 직장을 포기하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출산휴가에 남성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하게 되었다.

이는 8년간의 정부조사결과와 양성평등특별위원회의 역할에 힘입은 바있다. 결과적으로 여성과 남성을 가정에서 공동의 책임과 임무를 부여해 줌으로써 여성의 직장생활을 출산 후에도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었다.

1975년에는 낙태에 대한 여성의 권리를 인정함으로써, 임신 및 출산은 여성의 고유한 권리로 인정되었다. 1980년에는 양성평등 옴부즈만(Jämställdhets Ombudsman; JämO)을 임명하여 양성평등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성에 기인한 불평등을 감시하고 조사할 수 있는 전권을 위임 받았다.⁵ 같은 해인 1980년에는 세계 최초로 양성평등법을 제정하여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육체적 성(Sex)가 아닌 사회적 성의 개념인 젠더(Gender) 개념으로 규정해서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⁶

⁵ 양성평등 옴부즈만제도는 국민들이 성차별을 당했을 때 신고할 수 있는 신문고체도로 반드시 조사결과를 신고인에게 통보하며, 사안에 따라 사법부에서 심사하도록 이양하기도 한다.

양성평등 옴부즈만제도는 공식홈페이지인 <<http://www.jamo.se>>를 참조.

⁶ 스웨덴에서 사회적 역할과 연관된 성의 개념을 Genus란 용어로 사용하기 시작한 것도 이 때부터이다.

스웨덴에서 양성평등정책이 국가적 과제로 정치사회에 가장 폭넓게 영향을 미친 것은 무엇보다도 1987년 제출된 국가연구보고서(SOU, Statens Offentlig Utredning; National Investigation Report)라고 할 수 있다. 앞서서도 언급한 ‘바르안난 다메르나스’⁷의 연구보고서는 명칭의 상징성 뿐만이 아니라, 1980년 이후 실질적으로 스웨덴의 양성평등정책에 끼친 파급효과는 상상을 초월한다. 이 연구가 스웨덴 정부의 관심을 갖게 된 직접적 계기는 무엇보다도 나이로비에서 1985년에 개최된 제 2회 유엔 여성회의가 21세기 정책아젠다로 여성문제를 설정하면서 부터였다. 이 회의는 여성문제를 전세계 각국의 정책 아젠다로 설정해 선진 산업국가 가 국제원조기금을 제공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원조국에 양성평등을 요구하도록 권장했다.

1985년부터 1987년까지 2년에 걸쳐 완성된 이 국가연구보고서(SOU)는 몇가지 여성관련 정책을 제안하고 있다.

- 성의존적 분리 교육제의 폐지
- 성의존적 분리 직업선택제의 폐지
- 직장내 여성의 노동조건과 환경의 개선
- 양성간 동일노동 동일임금제 실시
- 육아 및 가사의 공동책임제
- 성폭력으로부터의 자유에 대한 보장확대
- 정책결정기관 및 정부산하기관의 여성비율 확대⁸

정부의 양성평등 정책결정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는 이 연구보서는 양성평등을 지향하는 학교교육, 양성평등 직업교육, 직장내 성평등, 양성 동일 임금제, 성평등을 위한 가정정책, 성폭력으로부터의 보호 등과 같은 여성의 권익신장에 대한 총체적 사회경제 및 교육정책목표까지 총 망라하고 있다.

이 정책제안의 주된 내용인 정책결정 및 정부기관에서의 여성비율 확대는 위에 나열한 정책을 주체적으로 입안하여 실천하는 권력기관에서 여성비율을 높힘으로써 실질적 정책추진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졌다.

표 1. 스웨덴의 양성평등정책의 발전과정 (1970-1990)

| 연도 | 현안 |
|------|--|
| 1970 | ● 헌법개정. 양원제에서 단원제로. 사회발전의 기폭제. 팔메 (Olof Palme) 수상 2인의 여성장관 임명. |
| 1971 | ● 여성과 남성의 독립적 연말정산 제도 도입. 가정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권 보장. 여성의 사회진출을 촉진시켰던 기폭제 역할을 함. |

⁷ 단어그대로 직역하면 두명 중 한명 꼴로 여성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

⁸ SOU 1987:19. *Varannan damernas: Kvinnorepresentation i styrelser och kommittéer.*

| | |
|---------|--|
| 197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메수상 양성평등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수상직속으로 임명. 양성평등이 정치적으로 중요한 정책분야로 자리잡음. 양성평등에 대한 사회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성의 문제가 개별적 사안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분야, 정책부서가 함께 제시하고 해결해야 할 포괄적 정책목표로 제안. 양성평등위원회는 변화된 사회를 주도적으로 양성평등실현을 위한 연구와 정책제안을 주도함. |
| 1973-7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의 진화 개설행. |
| 197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모양육휴가제도 도입. 8년간의 정부조사연구의 결실. 직장여성이 출산휴가, 양육 등을 동시에 해결하면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바침한 중요한 가정정책. 부모양육휴가제도는 남성에게도 가정의 육아, 가사 등에도 여성과 동일하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양성평등의 중요한 역할을 함. |
| 197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낙태권 인정. 여성의 선택권으로 인정. • 국제연합(UN)이 주체한 1차 여성회의. 10년 내 여성정책이 사회의 중요한 아젠다로 설정될 것을 목표로 함. 국제 행동강령(Action Plan) 채택과 함께 각국의 구체적 실천계획을 입안하도록 권고함. |
| 197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차대전 이후 최초 우익정권 입각. 수상직속 양성평등위원회를 폐지하고 의회 노동시장상임위원회 산하에 양성평등 위원회를 둬. 국제연합이 제시한 양성평등 행동강령 실천을 위한 정책제안의 임무를 부여. • '그룹 8'이라는 사회단체가 세가지 중요한 정책제안. 1. 여성의 노동에 관한 권리, 경제적 독립보장. 2. 가정생활의 권리장전 (즉 여성이 직장생활과 함께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지탱할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는 내용). 이에 따라 유아 1인당 탁아소 자리 보장요구. 3. 여성의 사회적 책임과 적극적인 시민역할의 도입. 즉 여성의 정당활동, 노조활동, 시민단체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요구. • '그룹22'란 정치단체는 당시 사민당과 중도적 위치에 있던 국민자유당 당원모임으로 그룹8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입안하고 정책제안을 위한 정치모임으로 발전. |
| 1979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75년 국제연합의 권고안에 따라 스웨덴의 양성평등실천계획을 위한 정책제안을 양성평등위원회에서 내놓음. 양성평등의 단계적 발전을 위한 제안 (Steg på väg). 남성과 여성을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기술. 젠더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 • 양성평등법 제안 |
| 198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옴부즈만(Jämställdhets Ombudsman; JämO; Equal Opportunities Ombudsman) 임명. • 스웨덴 최초 양성평등법 제정. 고용주와 노동자의 관계를 젠더적 개념으로 규정해서 여성을 남성과 동일한 조건으로 고용해야 한다고 명시. |
| 198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민당 정권교체. 팔메수상 양성평등위원회를 노동시장부에 존속시키고 개인 양성평등정책자문관을 임명. • 정부연구지원 사업인 '남성의 양성평등에 관한 시각'이라는 보고서는 양성평등을 위해 남성의 시각이 먼저 변화해야 실현가능하다고 봄. 대다수의 남성들은 양성평등에 본질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결론지음. • 가정 내 남편의 폭력은 피해자의 신고없이도 구속 가능. |

| | |
|---------|--|
| 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정치를 권력의 관계로 규정하고 권력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보고서 제출케 함. 권력과 민주주의의 관계를 규정한 스웨덴의 국가조사위원회 연구. 이 1990년에 제출된 연구보고서(SOU 1990: 44)는 스웨덴의 1990년대 이후 민주주의를 심화발전시킨 중요한 보고서로 활용됨. 사회의 각 구성원을 권력의 개념에서 사회 각 세력주체간의 평등적 개념, 양성평등적 시각에 입각한 연구보고서. • 건강 및 기초의료보험은 여성의 권익신장에 중요한 자원임을 천명. |
| 198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2회 유엔 여성회의 나이로비 개최. 21세기 정책아젠다로 설정. 여성문제를 국제원조와 연관지음. |
| 1985-87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 대의성을 대폭 늘릴 수 있도록 특별조사연구팀 임명. 국가연구조사위원회 "Varannan damernas" 보고서 제출. |
| 1987-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 집행위원회 (Jämställdhetsrådet; Council for Gender Equality) 설립. • 양성평등 법안인 '1990년대를 위한 양성평등정책' 정부에서 의회에 제출. 1998년까지 실천계획인 이 법안에서 정부임명직의 50퍼센트를 여성에게 50 할당할 것을 정책목표로 정함. |
| 198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88년 총선 의회에서 여성의원 비율 38% 기록. |

스웨덴에서 지속적으로 양성평등국가로 진행되어 나갈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로 1980년대 사민당 하에서 양성평등정치를 민주주의내 권력관계의 개념과 연관시켜 권력의 독점 혹은 편중현상을 해결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점을 국민에게 부각시키고, 조사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정책결정에 반영하고자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1985년 사민당 정권은 남녀의 권력관계 뿐 만이 아니고, 스웨덴 민주주의 하에서 세 세력의 권력관계를 점검해 보는 연구보고서를 제출할 것을 결의하는 정부교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결성된 국가조사연구팀은 페테르손(Olof Petersson) 옉살라 대학 정치학교수를 팀장으로 하여 작성된 최종보고서 "스웨덴의 민주주의와 권력"(SOU 1990: 44)를 통해 스웨덴 민주주의에서 정당, 노조, 남성, 여성, 소수민족, 지역 및 각 세력간의 권력관계가 어떻게 행사되는지를 규명하고자 했다. 이 보고서의 제 3 장은 '스웨덴의 양성평등 관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장에서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정치적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정치적 효능이 낮아 참여가 낮다고 결론짓고 있다.

따라서 이같은 남-여성간의 불균형적 권력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사안이 중앙 및 지방의회 내에서의 여성의원률의 지속적 증가와 함께 사회 전 부면에 걸쳐 여성의 지위향상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위상이 결국 정치참여에 있어 불균형관계와 연관이 있다고 규정하고 앞으로 더욱 여성의 권력확대를 위해 양성평등문제가 사회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⁹

⁹ SOU 1990:44. *Demokrati och makt i Sverige*. Stockholm: Erlanders Gotab. 제 3 장.

1991년 선거에서 승리한 우익정부는 중요한 정치적 아젠다로 자리잡은 양성평등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위해 사회부내에 양성평등부를 신설하고 양성평등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전문적인 행정업무를 관장하도록 했다. 이는 1980년 세계에서 유일하게 설립된 양성평등 옴부즈만제도 그리고 같은 해에 제정된 양성평등법과 함께 매우 진일보한 양성평등정책 실현국가로 앞서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지속적으로 정치적 영향력의 시각으로 분석된 ‘균형의 권력 - 균형의 책임 (SOU 1993/94:147)’ 이라는 국가조사연구보고서는 양성평등정치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권력기관내에 50%씩 권력이 분점되는 것이 필수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여성의원 비율을 지속적으로 높여 50%까지 이르게 하고, 내각, 정부산하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모든 정책결정기관이 여성의 권력분점을 위해 개혁을 지속해 나가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이의 결과 양성평등정치는 스웨덴에서 명실상부한 주류정치(Main Stream)로 편입되었고, 더 이상 양성평등 정치는 소수의 목소리가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문화부문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적 시각이 적용되기 시작했다.

1994년 정부교서에서도 국가정책 수립과 실행시 성인지와 성평등에 대한 강조와 함께 정부 산하조직, 각 기관, 그리고 지방자치 단체에 이르기까지 국정지침서(Direktiv)를 통해 매년 보고하도록 하고 얼마나 잘 실행되고 있는지 평가하여 예산 배정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¹⁰ 따라서 1970년부터 시작한 양성평등정치가 세계개편을 통한 여성의 독립 재산권 인정, 양성평등법 제정, 양성평등 옴부즈만제, 그리고 양성평등부 설치와 예산집행 및 정책평가에 이르기까지 양성평등사회 구현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의 결과 1995년 북경에서 개최된 제 3차 유엔 여성회의에서 스웨덴이 양성평등정책에서 가장 앞선 국가로 인정되는 영예를 차지하기도 했다.¹¹

현재 스웨덴은 정치에서 양성평등을 어느 정도 이루었다고 보고 경제부분에서 내재하고 있는 여성불평등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래에서 다루게 될 기업내 여성이사의 비율은 아직까지 20% 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회사내 중역 등용율도 30%를 밑돌고 있기 때문에 사민당 정부는 2006년 국가조사연구보고서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제계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양성불평등 구조를 법제정을 통해 바로 잡고자 시도했다. 사민당정부는 2006년 상장기업 이사회 여성40퍼센트 할당비율을 2010년까지 의무화하는 기업양성평등법을 의회에 제출하고자 했으나 사민당이 9월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법안이 상정되지 못하고 현재 잠복중인 상태로 남아있으나, 2010년 사민당이 정권을 다시 차지하게 될 경우 이 법안의 제출은 불을 보듯 훤히 한 상황이다.¹²

결국 스웨덴의 양성평등정치 구현을 위해 국가조사연구보고서를 통해 지속적으로 국민의 양성평등에 대한 관심을 환기시킬 수 있었고, 국가아젠다로 설정될 수 있는

¹⁰ 양성평등 국가지침(Jämställdhetsdirektiv)은 매년 정부에서 정부기관 및 각 산하단체에 예산을 배정할 때 국가의 정책목표를 시달하고 매년 연말 지침서에 따른 실행여부를 보고서로 정부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¹¹ SOU 1998:6. UN 여성회의에서 스웨덴이 최고 우수 양성평등국가로 선정되어 양성평등부장관이 직접 UN 여성대사였던 제인폰다로부터 수여장을 받았다. 직접적 동기로 당시 여성회의의에서 30%까지 여성대의성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었으나 이미 스웨덴은 10년전인 1985년에 31%를 달성했고, 1994년에는 여성의원율이 40%를 상회하고 있었다.

¹² 40 퍼센트 할당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150,000 크로네 벌금형.

기반을 마련해 나갔다. 특히 조사연구보고서의 정책권고 사항을 법제화, 제도화로 연결시켜 양성평등 정치가 국민생활의 일부로서 주류정치로 편입될 수 있도록 지대한 역할을 해 왔다. 양성평등정치와 관련된 국가의 연구보고서는 다음을 들 수 있다.

- SOU 1987:19. *Varannan damernas: Kvinnorepresentation i styrelser och kommittéer.* (두명당 한명꼴로 여성으로: 국가정책기관 내의 여성대의성).
- SOU 1990:44. *Demokrati och makt i Sverige*(스웨덴 민주주의와 권력).
- SOU 1993/94:147. *Delad makt - delat ansvar; Balanced power - balanced responsibility* (균형의 권력 - 균형의 책임).
- SOU 1994:3, *Mäns föreställningar om kvinnor och chefskap* (여성과 여성상관에 대한 남성의 시각).
- SOU 1997:114. *Styrsystem och jämställdhet: Institutioner i förändring och könsmaktens framtid* (통치제도와 양성평등: 제도적 변화와 성권력분담의 장래).
- SOU 1997:135, *Ledare, makt och kön* (지도자, 권력 그리고 성).
- SOU 1998:6. *Ty makten är din: Myten om det rationella arbetslivet och det jämställda Sverige* (권력은 당신의 것: 합리적 노동생활과 양성사회에 관한 신화).
- SOU 2000:40. *Välfärd och försörjning - Välfärdsbokslut* (복지와 공급: 복지계산서).
- SOU 2005:73. *Reformerad föräldraförsäkring* (산후부모수당의 개혁).

표 2. 1990년대 이후 최근까지의 양성평등정치 발전과정

| 년도 | 현안 |
|------|---|
| 1990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팔메수상 하에서 1985년 임명되었던 국가조사연구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 "스웨덴 민주주의와 권력" (SOU 1990: 44)에서 제3장은 스웨덴의 양성평등 관계를 새롭게 조명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아젠다로 자리잡게 하는 매우 중요한 영향력을 미침. |
| 1991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빌트 (Carl Bildt) 우익정권 등장. • 사회부와 함께 양성평등부 신설. |
| 199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연구보고서 SOU 1993/94:147 제출. • 균형의 권력 - 균형의 책임 (Delad makt - delat ansvar; Balanced power - balanced responsibility). 양성평등은 권력관계에서 필수적인 요소. • 양성평등정치가 주류정치(Main Stream)으로 자리잡음 • 모든 정책분야에서 양성평등적 시각 적용. |
| 199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민당 집권. 양성평등부장관 계속 유지. • 국가사회통계에 성의 구분을 필수로 함. • 국가지침서를 각 지방자치단체에 보내 양성평등정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계도하고 감독. |
| 199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부는 정부조직체계의 고정된 틀로 정착. |
| 19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광역자치단체에 양성평등국장 임명. 양성평등정책연구에 새로운 지원. |

| | |
|------|---|
| 199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유엔 여성회의 북경개최. 양성평등정책을 주류정치의 장으로 등장. • 모든 정부와 정치행위자들은 양성평등적 시각을 모든 정책프로그램에 주류정치로 편입시키는 적극적이고 현시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정책결정이전에 양성평등적 시각에서 분석하고 양성에 미치는 영향평가를 반드시 할 것을 권고함. • 흔히 Beijing Process로 불리우는 여성의원 비율 30%를 목표로 설정. • 북경회의에서 스웨덴이 양성평등정책에서 가장 앞선국가로 인정. |
| 199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성과 연계된 의학연구. • 연구의 모든 분야에 양성평등적 시각을 반드시 고려해야만 연구비 지원. |
| 199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98년 9월 선거에서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가진 쉬만 (Gudrun Schyman)이 이끄는 좌익당의 약진. 좌익당의 정치적 약진과 함께 정당차원에서 여성문제가 가장 중요한 정치적 이슈로 자리잡음. 2000년대의 화두는 곧 양성평등정치가 지속적 경제발전의 중요한 수단이자 목표로 자리잡음. • 양성평등부, 재무부 산하로 이전. |
| 2003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성평등부, 법무부 산하로 이전. |
| 2004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여성당 (Feminist Initiative) 창당. 좌익당에서 탈당한 쉬만이 페미니스트적 시각을 가진 사회단체지도자와 교수 등을 규합하여 2006년 선거에 참여. |
| 200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장기업 이사회 여성40퍼센트 할당비율을 2010년까지 의무화하는 기업양성평등법 제정을 계획함. 40퍼센트 할당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업은 150,000 크로네 벌금형. 시민당이 9월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법안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음. • 여성당 또한 1.3 퍼센트의 저조한 기록으로 의회진입에 실패. |

3. 정치 및 경제활동영역에 있어서의 여성참여

여성의 정치적 대의성(Representativeness)은 최근 25 년동안 가파르게 상승되어 왔다. 1960 년대까지 여성의원비율은 10 퍼센트대에 머물다가 1970 년대 들어 본격적으로 20 퍼센트 수준으로 접어들었다. 다시 30 퍼센트 수준으로 한단계 올라서게 된 기간은 1980 년대로 1988 년 선거에서는 38 퍼센트 수준까지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1 년 선거에서는 여성의원율이 다소 주춤한 35 퍼센트를 기록하게 되는데 이는 상대적으로 여성의원율이 낮은 4 개 우익정당들이 선거에서 승리한 반면 여성의원율이 높은 환경당이 의회진출에 실패함으로써 기인한 바가 컸다. 4 년 후 선거에서 다시 51%의 여성공천율을 기록한 환경당이 의회에 복귀하고 시민당과 좌익당의 경우에 있어서도 여성공천율을 각각 50%, 48%를 기록함으로써 여성의원비율이 41 퍼센트까지 다시 가파르게 올라갔다. 이후 스웨덴의회에서의 여성의원비율은 한번도 40 퍼센트 아래로 내려간 경험이 없을 정도로 탄탄한 45 퍼센트 내외의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되어 오고 있다.

표 3. 여성의원비율의 변천

| 선거연도 | 여성의원비율 |
|--------|------------|
| 1950년대 | 평균 5% 수준 |
| 1960년대 | 평균 7.5% 수준 |
| 1970 | 14.0 |
| 1973 | 21.1 |
| 1976 | 22.9 |
| 1979 | 26.4 |
| 1982 | 27.2 |
| 1985 | 31.0 |
| 1988 | 37.5 |
| 1991 | 33.0 |
| 1994 | 40.1 |
| 1998 | 43.4 |
| 2002 | 45.0 |
| 2006 | 47.3 |

출처: Björkhem, Engström & Wängnerud (1994)와 저자가 선거결과분석을 바탕으로 작성한 것임.

스웨덴에서 여성의원비율과 함께 여성의 정치적 지위를 실질적으로 확대하게 된 계기가 된 것이 여성장관비율이다. 아래 표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역대 여성장관수와 비율은 꾸준히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68년 개각에서 임명된 2명의 여성장관을 시작으로 1970년 개각에서 5명이 장관으로 임명되었고 이후 1985년 선거에 이르기까지 좌우익정권이 교차하면서도 이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1988년 사민당 칼손(Ingvar Carlsson) 수상의 여성장관을 대거 기용한 후 1991년 우익정권의 등장에 따라 잠시 주춤한 후 1994년부터 전체 내각의 거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10-11명이 여성으로 임명됨으로써 의원들로부터 장관여성기용율에 이르기까지 중앙정치에서 여성은 사회의 남녀구성비에 충실한 권력분점을 이루고 있다.

표 4. 역대 스웨덴 내각 여성 장관수

| 선거연도 | 여성장관수 | 여성장관 비율 | 정권 |
|------|--------|---------|----------------|
| 1970 | 5 (26) | 19.2 | 사민당소수내각 |
| 1973 | 4 (26) | 15.4 | 사민당소수내각 |
| 1976 | 5 (22) | 22.7 | 우익연립(m, fp, c) |

| | | | |
|------|---------|------|---------------------|
| 1979 | 4 (20) | 20.0 | 우익연립 (m,fp, c) |
| 1982 | 6 (23) | 26.1 | 사민당소수내각 |
| 1985 | 6 (22) | 27.3 | 사민당소수내각 |
| 1988 | 10 (22) | 45.5 | 사민당소수내각 |
| 1991 | 6 (23) | 26.1 | 우익연립 (m, fp, c, kd) |
| 1994 | 11 (22) | 50 | 사민당소수내각 |
| 1998 | 11 (22) | 50 | 사민당소수내각 |
| 2002 | 11 (22) | 50 | 사민당소수내각 |
| 2006 | 10 (22) | 45.5 | 우익연립 (m, fp, c, kd) |

스웨덴 우익정당들

m: Conservative Moderate Party

fp: Liberal Peoples' Party

c: Center Party

kd: Christian Democrat

중앙정치에서의 또 다른 권력기관인 의회내 15 개의 상임위원회에서 여성이 위원장을 차지하는 비율에 있어서도 매우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2002년 사민당 소수내각 하에서의 여성위원장 점유율은 37.5 퍼센트로 다른 권력 기관에서 보다 다소 낮은수준에 머물렀으나, 2006년 선거 후 우익연립정권 하에서 임명된 상임위원장의 여성비율은 7 개에 이르러 48%를 차지하고 있어 의회에서의 여성비율의 상승과 보조를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행정부 내에서 장관을 보좌하는 정책비서관의 경우 사민당 내각의 37%보다 다소 낮은 27.3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의 비율이 정책비서관만 제외하고 거의 50% 수준에 이르고 있어 행정부, 입법부 모두 양성평등 권력분점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5. 각 정치분야에서의 여성비율(%)

| 구분 | 여성비율 (2002) | 여성비율(2006) |
|-------------|-------------|------------|
| 내각 | 50 | 45.5 |
| 의회(Riksdag) | 45.3 | 46.4 |
| 의회 상임위원장 | 37.5 | 48.0 |
| 정책비서관 * | 37 | 27.3 |

출처: 이 자료는 2002년 사민당 정권과 2006년 우익연립내각 하에서의 통계를 필자가 취합한 것임.

* 정책비서관(Statssekreterare)은 부처의 장관을 수행하며, 관료조직과 정치조직을 연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정치임명직이기 때문에 집권기간동안 장관을 보좌하다가 장관과 함께 퇴진한다.

그렇다면 여성의원비율이 정당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2006년 선거에서 정당별 여성의원 비율을 살펴보자. 먼저 우익계 정당 들의 여성의원 비율을 보면 우익계 진영에서 가장 높은 국민당의 경우 53.6 퍼센트에 이르고, 보수당의 경우 43.3 퍼센트를 기록해 우익계 정당 들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으나, 정부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두개 정당들은 의회내 평균 수준에 훨씬 못미치는 수준인 37 퍼센트대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좌익계 정당에서 가장 높은 좌익당의 경우 63.6 퍼센트를 기록하여 의회 평균수준인 46.4 퍼센트보다 높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또한 가장 의회내에서 가장 큰 정당인 사민당의 경우 48.5 퍼센트를 기록해 역시 평균 수준을 웃 돌고 있으나, 전통적으로 여성공천율이 높았던 환경당의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42.1 퍼센트에 머물러 전통적으로 남성위주의 정당이었던 보수당보다도 낮은 여성의원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은 의외라 하겠다.

표 6. 2006년 총선 정당별 여성의원 비율 (%)

| 구분 | 여성의원 비율 |
|-----------------|-------------|
| 의회 진출 정당 | 46,4 |
| <u>우익계정당</u> | |
| 보수당(m) | 43.3 |
| 국민당 (fp) | 53.6 |
| 중앙당 (c) | 37.9 |
| 기독민주당당(kd) | 37,5 |
| <u>좌익계정당</u> | |
| 사민당(s) | 48,5 |
| 좌익당(v) | 63.6 |
| 환경당(mp) | 42.1 |

http://www.val.se/val/val2006/valdaled/stat_start.html. 2007-11-18.

이렇듯 여성이 권력의 심장부인 행정부와 입법부, 그리고 정당 분야에서는 여성의 권력분점이 상당부분 이루어지고 있지만 과연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여성의 사회참여와 함께 각 활동분야에서 상위직위에 있어 여성의 비율은 얼마나 차지하고 있을 것인가?

아래의 표에서 확인되고 있는 바와 같이 여성의 사회노동참여율은 스웨덴이 다른 서구산업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77.1 퍼센트에 이르고 있다. 이는 다른 북구국가인 덴마크의 75 퍼센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고, 미국보다도 OECD 전체 평균치인 59.3 퍼센트보다 무려 17 여 퍼센트가 높은 수치이고, 프랑스, 독일의 61-64 퍼센트보다 높은 수준이다. 즉 스웨덴의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산업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나타낸다고 하겠다. 그렇다면

1970년대 이후 여성의 지위가 꾸준히 향상되어 왔던 것 처럼, 경제분야에 있어서도 여성이 상위그룹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과 비슷한 수준에 이르렀을까?

표 7. 세계 각국의 여성 노동인구비율.

| | 여성 | 남성 |
|---------|------|------|
| 스웨덴 | 77.1 | 81.4 |
| 덴마크 | 75.0 | 83.3 |
| 독일 | 63.8 | 79.3 |
| 영국 | 67.6 | 82.2 |
| 프랑스 | 61.8 | 74.3 |
| OECD 유럽 | 56.3 | 77.3 |
| 미국 | 70.5 | 83.4 |
| OECD 전체 | 59.3 | 80.5 |

출처: OECD, 2002.

아래의 표를 보면 여성의 경제적 활동에 있어서 지위를 짐작케 한다. 먼저 상장기업의 여성이사비율을 살펴보면, 2002년 6.1 퍼센트를 기록한 이후 최근 2006년까지 꾸준히 상승하여 18.2 퍼센트 올라가 최근들어 상당히 개선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기업 내 여성의 지위에 관한 또 하나의 지표로 상장기업내 부장급 이상의 여성임원율을 보면 조사가 이루어진 2002년부터 최근 2006년까지 안정적인 30 퍼센트 이상의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상장기업내 다양한 부서에서의 여성임원비율을 보면 인사, 홍보, 재무, 영업 등의 기업내 권력부서에서 부장급 이상의 임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2002년에 높게는 51, 낮게는 42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른다. 또한 최근 2006년까지의 변화를 보아도 4개 권력부서에서 꾸준히 여성임원비율이 상승하던가, 비슷한 수준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반적으로 여성임원 비율이 10-20 퍼센트 수준을 보여주고 있고, 부회장, 회장 등 회사 내 높은 서열로 올라갈수록 여성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으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상장기업을 직종별로 구분하였을 때 여성임원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분야는 도매업종으로 여성임원비율이 80 퍼센트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 모든 업종에서 10-30 퍼센트의 여성 임원율을 기록하고 있다. 신규사업자 등록의 30 퍼센트 이상이 여성이 차지하고 있어, 시장에 새로 진입하는 소규모 사업자의 경우 여성이 상당히 약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이것도 최근 5년동안 3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다.

이를 통해 보았을 때 아직 상장기업내 여성의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인 이사비율 및 임원비율에 있어 긍정적인 면은 여성이사비율에 있어서는 최근 들어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는 점과 여성임원비율에 있어 권력부서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 있음은 고무적이라 할 수 있겠으나,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경력활동이 진행될수록 여성임원율이 낮아지고 있고, 특히 CEO의 경우 여성비율은 1-2 퍼센트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은 여성의 경제적 지위가 아직 남성에 비해 매우 불균형적인 상황에 처해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표 8. 상장기업 여성이사비율 (2002-2006)

| | 2002 | 2003 | 2004 | 2005 | 2006 |
|-------|------|-------|-------|-------|-------|
| 여성이사율 | 5,1% | 11,1% | 14,9% | 16,3% | 18,2% |

출처: SIS Ågarservice. 2006.

표 9. 상장기업 여성임원비율(2002-2006)

| | 2002 | 2004 | 2005 | 2006 |
|-----------------|-------|-------|-------|-------|
| 여성임원수(부장 이상급) | 640 | 857 | 828 | 769 |
| 남성임원수(부장 이상급) | 1 444 | 1 672 | 1 709 | 1 697 |
| 부장이상 여성 임원율 (%) | 30,7 | 34 | 33 | 31 |

출처: Women's Business Research Institute, Wombri, Micromediabanken. 2007.

참조: 상장기업 임원은 부장이상의 부서장.

표 10. 상장기업 부서별 여성임원비율(%)

| 직위 | 2002 | 2004 | 2005 | 2006 |
|---------|------|------|------|------|
| 인사부장 | 52 | 50 | 59 | 57 |
| 홍보부장 | 45 | 42 | 48 | 46 |
| 재무부장 | 41 | 36 | 41 | 40 |
| 영업부장 | 41 | 39 | 36 | 37 |
| 재무회계부장 | 10 | 19 | 25 | 29 |
| 시장조사부장 | 30 | 32 | 28 | 27 |
| 지역총괄부장 | 16 | 17 | 19 | 23 |
| 전산컴퓨터부장 | 20 | 18 | 21 | 21 |
| 연구부장 | 14 | 11 | 13 | 13 |
| 생산부장 | 10 | 13 | 9 | 10 |
| 기술부장 | 2 | 9 | 6 | 6 |
| 부회장 | 4 | 6 | 4 | 6 |
| 회장 | 2 | 2 | 2 | 1 |

출처: SIS Ågarservice. 2006.

표 11. 직종별 상장기업 여성임원비율(%)

| 직종 | 2002 | 2004 | 2005 | 2006 |
|----|------|------|------|------|
|----|------|------|------|------|

| | | | | |
|----------|----|----|----|----|
| 제조업 | 15 | 18 | 18 | 17 |
| 건설업 | 7 | 11 | 11 | 12 |
| 소매업 | 21 | 20 | 17 | 19 |
| 도매업 | 85 | 85 | 84 | 82 |
| 금융/보험/재무 | 21 | 35 | 35 | 34 |
| 건설팅/부동산 | 17 | 22 | 21 | 20 |
| 호텔, 요식업 | - | 30 | 20 | 18 |
| 물류 | - | 22 | 24 | 21 |
| IT 기업 | - | 20 | 21 | 17 |
| 문화오락산업 | - | 17 | 19 | 15 |

표 12. 소규모 개인회사 설립 여성비율 (1993-2004)

| | 1993 | 1994 | 1995 | 1996 | 1997 | 1998 | 1999 | 2000 | 2001 | 2002 | 2003 | 2004 |
|-----------------|-------|-------|-------|-------|-------|-------|-------|-------|-------|-------|-------|-------|
| 신규등록 회사 중 여성창립수 | 4700 | 8700 | 8750 | 10000 | 11100 | 10500 | 11462 | 12398 | 11010 | 10594 | 10601 | 12349 |
| 전체신규회사등록수 | 22400 | 34700 | 35000 | 36000 | 37000 | 33900 | 35820 | 38745 | 35517 | 37348 | 36771 | 41608 |
| 신규 창립회사 여성비율 | 21% | 25% | 25% | 28% | 30% | 31% | 32% | 32% | 31% | 28% | 29% | 30% |

출처: ITP, 2005.

종합해 보면 스웨덴의 정치경제분야에서 여성의 지위는 정치분야에서 거의 권력을 분점하고 있다할 정도로 지위가 상당히 안정적으로 확보되어 있으나, 경제분야에 있어서는 상대적으로 남성에 비해 열세에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2006년 사민당 하에서 양성평등법을 적용하여 여성이사비율을 40 퍼센트까지 의무적으로 높이기 위해 노력했으나 선거에서 패배함으로써 잠시 잠복중인 상태이기는 하지만 2010년 선거에서 다시 권력을 차지하게 될 경우 상장기업의 여성이사비율 40%를 충족시키도록하는 기업평등법을 제정하고자 할 것이 예측된다.

4. 여성대의성과 정당의 역할

스웨덴에서 여성대의성이 획기적으로 증가하게 된 성공적 배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을 빼놓을 수가 없다. 정치가 민주적으로 뿌리를 내린 정치체제에서 정당을 통한 정치충원과 물갈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당의 공천과정이 개방되지 않고서는 여성의 진출을 원활히 추진할 수 없다.

스웨덴의 경우 거의 2006년 선거에서 50%에 육박하는 여성의원율을 기록하게 된 과정을 보면 정당들의 여성공천비율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하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다. 1973년 정당의 여성공천율은 26 퍼센트에 이르고, 여성의원당선율은 그보다

약간 낮은 21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1976 년 선거에서 여성 공천율이 30 퍼센트대를 올라서면서 여성당선율도 동시에 24 퍼센트로 상승하고 있다.

1985 년 선거에서 40 퍼센트에 약간 못미치는 여성공천율에 힘입어 여성당선율은 30 퍼센트선을 넘게 되었다. 다시 여성당선율이 40 퍼센트 수준을 넘게 되는 과정에서 정당들의 여성공천율이 43 퍼센트를 상회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당선율도 40 퍼센트 선을 넘게 됨을 알 수 있다.

1998 년 선거에서부터 최근 선거에 이르기까지 여성 공천율과 당선율의 역전현상은 매우 드문 현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이는 스웨덴의 선거제도가 정당명부제 하에서 후보개인에게 표를 던질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여성후보가 남성후보들을 제치고 당선됨으로써 생기는 현상이다. 따라서 정당명부제 하에서 여성이 상대적으로 불리하다는 정설은 스웨덴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이는 선거운동기간동안 정당명부에서 당선가능성이 낮은 하위순위에 있는 후보라 해도 개인의 선거운동의 성공여부에 따라 상위에 있는 후보들을 대신해 당선될 수 있기 때문에 스웨덴의 정치에서 개인선거운동이 갈수록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최근 들어 순위가 낮을수록 개인선거운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경우가 갈수록 늘고 있다.

표 13. 여성후보율 및 여성후보당선율

| 선거 | 여성후보 공천율 % | 여성 당선율 % |
|------|------------|----------|
| 1973 | 26 | 21 |
| 1976 | 31 | 24 |
| 1979 | 37 | 25,5 |
| 1982 | 36 | 27 |
| 1985 | 39,5 | 31 |
| 1988 | 40,5 | 38 |
| 1991 | 40,4 | 34 |
| 1994 | 43,5 | 40 |
| 1998 | 42 | 43,8 |
| 2002 | 41 | 45 |
| 2006 | 42 | 46,8 |

출처: Friddenvall, 2006, p.81.

이제까지 전체 정당 들에 의한 공천된 여성후보와 여성당선자수를 보았다. 그렇다면 여성후보 공천 비율이 정당별로 어떻게 차이가 날 것인가? 예를 들어 우익계 정당들과 좌익계 정당들을 비교해 볼 때 좌익계열 정당들이 우익정당들에 비해 여성공천율이 일반적으로 높다는 것이 정설인데 과연 스웨덴 정치에서 입증되고 있는가? 또한 어떤 정당들이 가장 진보적으로 양성평등적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가를 여성후보공천율을 통해 알아보기로 한다. 여기서 여성의원 공천율이 거의 남성과 여성이 교차하면서 상위부터 하위까지 나열되는 정당명부제 하에 29 개의 지역구에서 정당의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배분하기 때문에 여성이 특별히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없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70 년대, 80 년대, 90 년대별로 나누어 볼 때 70 년대까지만 해도 각 정당 간의 여성후보공천율에 있어서 좌익과 우익계열의 정당간에 특별히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는 있지만 근소한 차이로 좌익계열 정당들의 여성공천율이

1.9 퍼센트로 상회하고 있다. 하지만 80년대와 90대에 들어 점차 그 차이가 벌어지고 있음으로 상회할 필요가 있다. 아래 표에서 보듯이 80년대에 우익계 정당들이 36.4 퍼센트이 여성공천율을 보여주고 있는 반면, 좌익계열의 3개정당의 경우 39.8를 기록하고 있어 70년대 비해 차이가 1.9 퍼센트에서 3.4 퍼센트로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경향은 90년대까지 지속되어 우익계열과 좌익계열 정당들의 여성후보 공천율은 4.7 퍼센트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결과는 전통적으로 우익정당 중에서 기독교민주당의 경우 낮은 여성공천율과 좌익계열의 사민당과 좌익당의 경우 50 퍼센트에 이르는 공천율을 보여줌으로써 그 격차는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앞에서 지적한 대로 전통적으로 우익계열 정당보다는 좌익계열 정당들이 양성평등적 정책을 선호하고 여성공천의 실천에 있어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양성평등 정책이 사민당의 장기집권 하에서 지속적으로 꾸준히 추진되어 왔기 때문에 여타 정당들도 여성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사민당과 좌익당의 뒤를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표 14. 정당별 여성후보 공천 비율

| 정당 | 1973 | 1976 | 1979 | 70년대 평균 | 1982 | 1985 | 1988 | 80년대 평균 | 1991 | 1994 | 1998 | 90년대 평균 |
|------------|------|------|------|------------|------|------|------|------------|------|------|------|------------|
| 보수당(m) | 26 | 31 | 35 | 30.7 | 32 | 32 | 34 | 32.7 | 31 | 35 | 37 | 34.3 |
| 중앙당(c) | 26 | 32 | 38 | 31.7 | 36 | 36 | 39 | 35.7 | 41 | 43 | 42 | 42.0 |
| 기독교민주당(kd) | 21 | 25 | 29 | 25.0 | 30 | 34 | 38 | 34.0 | 39 | 42 | 39 | 40.0 |
| 국민당(fp) | 30 | 34 | 41 | 35.0 | 39 | 44 | 46 | 43.0 | 45 | 43 | 43 | 43.7 |
| 신민주당(nd)* | - | - | - | - | - | - | - | - | 17 | - | - | - |
| 사민당(s) | 24 | 31 | 38 | 31.0 | 36 | 39 | 43 | 39.3 | 41 | 50 | 49 | 46.7 |
| 좌익당(v) | 27 | 35 | 40 | 34.0 | 40 | 46 | 44 | 43.3 | 44 | 48 | 50 | 47.3 |
| 환경당(mp) | - | - | - | - | 44 | 47 | 49 | 46.7 | 47 | 51 | 47 | 48.3 |
| 우익평균 | 25.8 | 30.5 | 35.8 | 30.6 | 34.3 | 36.5 | 39.3 | 36.4 | 39.0 | 40.8 | 40.3 | 40.0 |
| 좌익평균 | 25.5 | 33.0 | 39.0 | 32.5 | 40.0 | 44.0 | 45.3 | 39.8 | 44.0 | 49.0 | 48.7 | 44.7 |
| 전체평균 | 25.7 | 31.3 | 36.8 | 31.3 | 37.2 | 40.3 | 42.3 | 38.7 | 41.5 | 44.5 | 42 | 42.4 |

출처: Friddenvall, 2006, p.81 를 바탕으로 한 필자의 재작업.

* 신민주당(nd)는 극우정당으로 1991년 선거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의회진출.

그렇다면 여성 대의성제고를 위한 스웨덴 각 정당의 전략에 있어서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살펴보자. 즉 좌익계열의 정당들은 양성평등 정책을 추진하면서 여성의원율을 높이기 위해 어떤 정책을 추진해 왔고, 우익계열 정당의 경우 어떤 차이가 있을까?

스웨덴의 각 정당들의 여성비율제고를 위한 전략을 연구한 Friddenvall 은 그녀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정당들의 세 가지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그 세가지는 일반목표 (General goal), 정책권고 (Recommendation), 그리고 적극적 할당제 (Quata system)을 들 수 있다.

1. 일반목표 (General goal) 및 정책권고 (Recommendation)

일반목표는 각 정당들이 여성과 남성의 의원비율을 균형적으로 맞추기 위한 목표를 정당의 실천목표로 하되 어떤 구속력을 띠지 못하고, 권고의 경우 일반목표보다는 더욱 적극적인 전략으로 정당지도부의 적극적 권고 사항으로 공천과정 전에 발표하여 적극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자 할 때 사용된다. 정당들이 지도부 차원에서 먼저 당공천위원회의 여성비율 목표를 설정을 하고, 당 대회에서 추인되면 곧 바로 당 차원에서는 정책권고의 의미를 담는다. 즉 목표설정이 지도부 차원에서 원론적, 이상적 표현의 일부라면 정책권고는 바로 당원의 다수가 추인하게 되면 당론이 되어 권고안으로 격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 같은 두가지 전략을 주로 구사하고 있는 정당들은 우익 4개 정당들이 차지하고 있다.

표 15. 여성비율 제고를 위한 각 당들의 목표설정 및 정책권고

| 정당 | 내용 |
|--------|---|
| 국민당 | 1972년 이후 당내 기관의 여성할당 비율 40% 확정 실시. 1984년 선거에서부터 40% 여성비율 확보할 것을 권고. |
| 기독교민주당 | 1987년부터 40% 여성비율 목표설정. |
| 보수당 | 1993년 부터 50% 여성비율 확보목표 설정 |
| 중앙당 | 1996년 부터 50%여성비율 확보목표 설정 |

2. 할당제 (Quota system)

위의 두가지 전략과는 달리 할당제는 사회의 일부 소수를 보호하고 이익을 확대할 목적으로 일정 지분을 여성에게 할당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 주는 제도이다. 스웨덴의 정치에서 제도적으로 여성의 지분을 확보하기 위해 세개 정당이 할당제를 사용하고 있다. 할당제를 사용하고 있는 정당은 모두 좌익계열 정당들로 사민당, 좌익당 그리고 녹색당이 1987년 이후 지속적으로 전당대회에서 할당제를 추인해서 추진해 오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도 주목할 사실은 전당대회에서 당원들의 지지로 50 퍼센트 할당을 목표로 할 경우에도 지역구에서 당원 투표로 이루어진 정당명부의 순위가 반드시 여성에게만 유리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당지도부 차원에서 여성공천율을 50%를 목표로 한다고 해도 지역구 수준에서 실행이 되지 않을수도 있다.

그리고 스웨덴의 선거제도에서 선거 당일 유권자들의 투표로 하위후보의 순위를 상위로 올릴 수 있는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론적으로는 50%의 여성이 선출되지 않을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표 16. 여성 할당제를 채택하고 있는 정당

| 정당 | 내용 |
|-----|--|
| 사민당 | 1993년 전당대회에서 남성, 여성후보자를 교차순위제로 50% 씩 공천. |
| 좌익당 | 1987년 전당대회에서 최소 50% 여성할당 결정.. |
| 녹색당 | 1987년 전당 대회에서 50% 이상 여성할당. 1981년부터 당기관의 50%여성할당제 채택. |

5. 여성정치선진화를 위한 몇가지 제안

이 글은 세계에서 양성평등 정책으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스웨덴이 어떻게 균형적 권력배분이 이루어져 왔고, 어떤 경로를 거쳐 현재에 이르는지 소상히 소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스웨덴의 권력기관과 경제주체 특히 의회, 정부 그리고 상장기업 등에서 얼마만큼 양성평등이 실천되고 있는지, 세계에서 앞서가는 양성평등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취약점이 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다.

무엇보다도 스웨덴에서 여성의 지위가 획기적으로 신장되기 시작한 것은 여성의 사회진출에 따른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한 복지제도의 구축과정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즉 5-60년대 여성의 노동시장참여 비율이 점차 확대되면서 육아, 양육 등에 있어 국가적 책임이 강조되기 시작했다. 즉 여성이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때 파생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자치 탁아소를 의무화함으로써 여성이 자유롭게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이와 더불어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부모출산휴가제를 도입함으로써 가정내 노동과 육아 등을 전통적으로 여성에게만 맡겨져 있던 것을 남성에게도 책임을 부여함으로써 여성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할 수 있었다. 즉 여성이 직장생활을 영위하면서도 가사노동과 육아 등이 여성에게 있다는 일반적 통념을 가족정책의 일환으로 남성에게 책임과 의무를 부여해 줌으로써 가정내 균형잡힌 권력관계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게 하는 결과를 낳았다. 결국 여성이 기존의 가족관계에서 자연스럽게 사회적 가치로 정의되었던 출산, 육아, 가사노동 등이 남성과 동일하게 분담할 수 있게 됨으로서 가정을 벗어나 경제활동 및 정치활동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또한 사회적으로 여성과 남성의 공동책임론은 바로 균형정치권력론으로 발전되었다. 그 이전까지는 여성문제를 여성의 참정권보장, 일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소극적 여성정책에 국한되어 왔으나 1980년 이후에는 여성문제를 권력문제로 확대시켜 여성의 참여없는 민주주의의 완성이 없음을 확인하고, 여성의 참여를 입법부 뿐만 아니라, 행정부, 관료조직, 지방조직 등으로까지 확대하는 결과를 낳았다.

또 한가지 여성의 정치참여를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요소로 모든 정당의 적극적인 참여와 역할을 들 수 있다. 모든 정당이 의무적인 법제정 없이도 정당차원에서 자발적으로 여성공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여성대의성에 있어 이미 1980년대 중반에 30 퍼센트를 상회하고, 1990년대 들어 40 퍼센트 대로 진입할 수 있는 초석을 놓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좌익계열의 3개정당 즉, 사민당, 좌익당, 환경당이 당전당대회 차원에서 추진된 여성할당제를 실천하고 나오자 선거의 전략차원에서라도 유권자의 반인 여성유권자를 위해서도 양성평등성에 저해하고 있다는 오명을 벗기위해서라도 각 정당 들간에 경쟁적으로 여성후보 공천율을 높이는 관행이 생기게 되었다.

이와 같은 스웨덴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양성평등국가 실현을 앞당기기 위해 몇 가지 유용한 시사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 여성의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있도록 국가적 가족정책 지원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출산, 육아, 가사 등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울 수 있도록 출산휴가제를 도입하고 육아 등은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 재원을 지원한다. 1970년대 스웨덴이 세계개혁, 가족복지

확충을 통해 여성이 사회에 진출해 활동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여성이 직장에서의 성공을 위해 출산을 유보하거나 포기하는 경우로 인해 저출산의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가족복지제도의 구축은 필수적이며, 결국 여성 고급인력의 확보를 통해 노령사회에 안정적인 노동인력 공급이라는 경제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노정되는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해 주는 이중적 정책효과를 거둘수 있다.
- 정당들이 적극적으로 여성후보를 공천할 수 있도록 정당법에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거나, 일정수준의 의무규정, 예를 들어 2010년까지 UN 권고사항인 30%, 2015년까지 40% 등으로 구체적으로 목표수준을 설정하여 여성후보를 공천하도록 한다.
- 스웨덴은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를 통해 여성의원비율이 짧은 시간에 극대화를 이룰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식의 혼합제를 도입하던가, 비례대표 비율을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선거제도의 개혁을 필요로 한다. 다수대표제가 주류를 이루는 현 선거제도 하에서는 여성후보를 공천한다고 해도 이론적으로 선거에서 이길 확율은 최대한 50%에 그치기 때문에 그 효과는 그 보다 훨씬 낮게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1인 2표제를 바탕으로 중대선거구에서 여성후보 의무할당제와 소선거구 여성후보 공천율의 40-50% 할당과 같은 적극적 할당제가 필요할 수 있다.
- 여성의 정치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기 위해 국회직속 가칭 '양성평등실천위원회' 등을 두어 모든 정당이 동일하게 참여하게 하고, 중립적 학계, 시민대표, 전문가 인사 등을 중심으로 연구조사를 의뢰하여 연구결과를 국민토론회 등을 거쳐 국가적 아젠다로 승화시킬 필요가 있다. 스웨덴에서 1987년에 나온 '바르안난 다메르나스' 보고서가 결국 스웨덴이 세계최고의 양성평등국가가 있게 했듯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에 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단기적 효과를 보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스웨덴의 경우 1970년대 초 팔메수상이 여성장관을 적극 기용하기 시작하여 1994년 이후 50% 여성장관을 실현했듯이, 우리나라의 개각시에도 여성장관이 적극 임명될 수 있도록 여론을 성숙시켜야 한다. 여성정치인이 많을수록 정치부패가 낮고, 정치효율성이 높아지며, 사회의 소외계급을 통합하는 정책 등에서 여성의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면서 사회의 통합에도 기여한다는 점으로 널리 계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교육제도개선, 노동조건개선, 임금격차해소 등의 사회 전 분야에 걸쳐 사회구성원의 반은 여성이라는 것을 주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국가적 차원에서 유엔의 양성평등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국가적 연구지원사업으로 확정하여 연구에서 반드시 양성평등적 시각을 고려할 수 있도록 명시하며, 학진 연구지원 사업을 확대한다.
- 양성정치실현은 실력있고 능력있는 여성정치인을 많이 배출하는데 있다. 아무리 여성할당제를 통해 여성의원율을 높인다 해도 정치적인 무능, 남성정치와의 무차이점, 비효율적 정치로 점철된다면 양성평등정치는 단지 이상에 그치고 만다. 실력있는 여성의 정치인 양성을 위해 정당에서 의무적으로 여성정치 아카데미를 운영하도록 정당법에 명시하여

정당교부금의 일정부분을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여성정치아카데미를 수료한 사람에게에는 정당공천권을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정치활동을 목표로 하는 사람은 반드시 수료증을 취득하도록 유도한다. 스웨덴의 경우 각 정당의 여성분과위원에 소속된 회원은 여성정치아카데미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여성정치인의 중요한 증원수단으로 자리잡았고, 시민사회단체, 노조, 학계 등의 다양한 인재를 여성정치아카데미에 합류하게 함으로써 여성정치인의 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은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사민당의 경우 현 당수 모나살린, 각료, 의원, 유럽의회의원 등 정치엘리트는 모두 SSK (Swedish Socialdemocratic Women) 혹은 약칭으로 S-kvinnor (socialdemocratic women) 출신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 일종의 여성신문고와 같은 여성옴부즈만제를 도입하여 각종 여성의 불이익문제를 심사하여 해결하도록 하고 국회와 대통령으로부터 독립적인 여성지위향상을 위한 정책제안을 할 수 있도록 한다. 1980년에 제정된 스웨덴의 여성옴부즈만제는 스웨덴에서 양성평등국가를 수립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인 사회인식의 변화에 큰 역할을 수행했다.

참고 자료

Björkhem, Barbro, Lisbeth Hansing Engström & Lena Wängnerud. 1994. *Rätt att rösta 1919-1999. Så fick kvinnor politiskt inflytande*(선거권 1919-1999: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의 확대과정). Stockholm: Sveriges Riksdag.

Dahlerup, Drude (ed.). 2006. *Women, Quotas and Politics*. London: Routledge.

Freidenvall, Lenita. 1996. *Vägen till Varannan damernas. Om kvinnorepresentation, kvotering och kandidaturval i svensk politik 1970-2002* ('두명당 한명꼴로 여성으로' 제도까지. 1970-2002 스웨덴 정치의 여성대의성, 할당제와 후보선출제도. Stockholm: Stockholm University.

Larserud, Stina and Rita Taphorn (2007). *Designing for Equality. Best-fit, medium-fit and non-favourable combinations of electoral systems and gender quotas*. Stockholm: International IDEA.

Lovenduski, Joni and Pippa Norris (1993). *Gender and Party Politics*. Thousand Oaks. Sage.

Regeringens proposition 2005/06:155. *Makt att forma samhället och sitt eget liv – nya mål i jämställdhetspolitiken*. 사회와 개인삶의 구축을 위한 권력 – 양성평등정책의 목표. 정부법안.

Riksdagen (1994), *Rätt att rösta. 1919-1994 så fick kvinnor politiskt inflytande* (투표권. 1919-1994 기간동안 여성의 정치적 영향력에 대하여). Stockholm.

SOU 1987:19. *Varannan damernas: Kvinnorepresentation i styrelser och kommittéer*. (두명당 한명꼴로 여성으로: 국가기관내의 여성대의성) Stockholm.

SOU 1990:44. *Demokrati och makt i Sverige*(스웨덴 민주주의와 권력). Stockholm: Erlanders Gotab.

SOU 1993/94:147. *Delad makt - delat ansvar*(균형된 권력, 균형된 책임). Stockholm: Erlanders Gotab.

SOU 1994:3, *Mäns föreställningar om kvinnor och chefskap*(여성과 여성상사에 대한 남성의 시각). Stockholm: Erlanders Gotab.

SOU 1996:3. *Fritid i förändring* (변화하는 여가선용유형). Stockholm: Erlanders Gotab.

SOU 1997:114. *Styrsystem och jämställdhet: Institutioner i förändring och könsmaktens framtid*(통치제도와 양성평등: 제도적 변화와 성권력분담의 장래). Stockholm: Erlanders Gotab.

SOU 1997:135, *Ledare, makt och kön*(지도자, 권력 그리고 성). Stockholm: Erlanders Gotab.

SOU 1998:6. *Ty makten är din: Myten om det rationella arbetslivet och det jämställda Sverige*(권력은 당신의 것: 합리적 노동생활과 양성사회에 관한 신화). Stockholm: Erlanders Gotab.

SOU 2000:40. *Välfärd och försörjning – Välfärdsbokslut*(복지와 공급: 복지계산서). Stockholm: Erlanders Gotab.

SOU 2005:73. *Reformerad föräldraförsäkring*(산후부모수당의 개혁). Stockholm: Erlanders Gotab.

SOU 2005:66. *Makt att forma samhället och sitt eget liv – jämställdhetspolitiken mot nya mål*(사회와 개인삶의 구축을 위한 권력 – 새 목표를 위한 양성정치). Stockholm: Erlanders Gotab.

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2002, *På tal om kvinnor och män*(여성과 남성에 대하여). *Lathund om jämställdhet 2002*.

Utrikesdepartementet, *Makt och privilegier - om könsdiskriminering och fattigdom*(권력과 특권 – 성차별과 빈곤에 대하여), UD 2004.

Wahl, Anna, Holgersson, Charlotte och Höök, Pia, *Ironi & sexualitet, om ledarskap och kön*(성과 아이러니: 정치지도자론과 성). Stockholm: Carlssons förlag. 1998.

Åmark, Klas (1994) *Vem styr marknaden? Facket, makten och marknaden 1850–1990*(시장을 누가 지배하는가? 1850-1990년의 노조, 권력 그리고 시장). Stockholm: Tidens förlag.

Wängnerud, Lena (1999), *Kvinnorepresentation. Makt och möjligheter i Sveriges Riksdag*(여성대의성: 스웨덴의회에서의 권력과 권능에 관한 연구). Lund: Studentlitteratur.

Wängnerud, Lena (2002), "Kvinnors röst: en kamp mellan partier" in *Rösträtten 80 År – enforskarantologi*(여성의 목소리: 정당간의 권력투쟁). Stockholm: Justitiedepartementet.

Web 주소.

Swedish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http://www.val.se/val/val2006/valdaled/stat_start.html>. 2007-11-20.

Inter-Parliamentary Union (IPU) website, <<http://www.ipu.org>>. 2007-11-20.

양성평등 옴부즈만. <<http://www.jamo.se>>. 2007-11-20.

WORLD CLASSIFICATION

| Rank | Country | Lower or single House | | | | Upper House or Senate | | | |
|------|------------------------------|-----------------------|--------|-------|------|-----------------------|--------|-------|------|
| | | Elections | Seats* | Women | % W | Elections | Seats* | Women | % W |
| 1 | Rwanda | 09 2003 | 80 | 39 | 48.8 | 09 2003 | 26 | 9 | 34.6 |
| 2 | Sweden | 09 2006 | 349 | 165 | 47.3 | --- | --- | --- | --- |
| 3 | Finland | 03 2007 | 200 | 84 | 42.0 | --- | --- | --- | --- |
| 4 | Costa Rica | 02 2006 | 57 | 22 | 38.6 | --- | --- | --- | --- |
| 5 | Norway | 09 2005 | 169 | 64 | 37.9 | --- | --- | --- | --- |
| 6 | Denmark | 02 2005 | 179 | 66 | 36.9 | --- | --- | --- | --- |
| 7 | Netherlands | 11 2006 | 150 | 55 | 36.7 | 05 2007 | 75 | 26 | 34.7 |
| 8 | Cuba | 01 2003 | 609 | 219 | 36.0 | --- | --- | --- | --- |
| " | Spain | 03 2004 | 350 | 126 | 36.0 | 03 2004 | 259 | 60 | 23.2 |
| 9 | Mozambique | 12 2004 | 250 | 87 | 34.8 | --- | --- | --- | --- |
| 10 | Belgium | 06 2007 | 150 | 52 | 34.7 | 06 2007 | 71 | 27 | 38.0 |
| 11 | South Africa ¹ | 04 2004 | 400 | 131 | 32.8 | 04 2004 | 54 | 18 | 33.3 |
| 12 | Austria | 10 2006 | 183 | 59 | 32.2 | N.A. | 62 | 17 | 27.4 |
| " | New Zealand | 09 2005 | 121 | 39 | 32.2 | --- | --- | --- | --- |
| 13 | Iceland | 05 2007 | 63 | 20 | 31.7 | --- | --- | --- | --- |
| 14 | Germany | 09 2005 | 614 | 194 | 31.6 | N.A. | 69 | 15 | 21.7 |
| 15 | Burundi | 07 2005 | 118 | 36 | 30.5 | 07 2005 | 49 | 17 | 34.7 |
| 16 | United Rep. of Tanzania | 12 2005 | 319 | 97 | 30.4 | --- | --- | --- | --- |
| 17 | Uganda | 02 2006 | 332 | 99 | 29.8 | --- | --- | --- | --- |
| 18 | Switzerland | 10 2007 | 200 | 59 | 29.5 | 10 2007 | 36 | 6 | 16.7 |
| 19 | Peru | 04 2006 | 120 | 35 | 29.2 | --- | --- | --- | --- |
| 20 | Belarus | 10 2004 | 110 | 32 | 29.1 | 11 2004 | 58 | 18 | 31.0 |
| 21 | Guyana | 08 2006 | 69 | 20 | 29.0 | --- | --- | --- | --- |
| 22 | Andorra | 04 2005 | 28 | 8 | 28.6 | --- | --- | --- | --- |
| 23 | The F.Y.R. of Macedonia | 07 2006 | 120 | 34 | 28.3 | --- | --- | --- | --- |
| 24 | Timor-Leste | 06 2007 | 65 | 18 | 27.7 | --- | --- | --- | --- |
| 25 | Afghanistan | 09 2005 | 249 | 68 | 27.3 | 09 2005 | 102 | 23 | 22.5 |
| 26 | Namibia | 11 2004 | 78 | 21 | 26.9 | 11 2004 | 26 | 7 | 26.9 |
| 27 | Grenada | 11 2003 | 15 | 4 | 26.7 | 11 2003 | 13 | 4 | 30.8 |
| 28 | Viet Nam | 05 2007 | 493 | 127 | 25.8 | --- | --- | --- | --- |
| 29 | Iraq | 12 2005 | 275 | 70 | 25.5 | --- | --- | --- | --- |
| " | Suriname | 05 2005 | 51 | 13 | 25.5 | --- | --- | --- | --- |
| 30 | Lao People's Democratic Rep. | 04 2006 | 115 | 29 | 25.2 | --- | --- | --- | --- |
| 31 | Ecuador | 10 2006 | 100 | 25 | 25.0 | --- | --- | --- | --- |
| 32 | Lithuania | 10 2004 | 141 | 35 | 24.8 | --- | --- | --- | --- |
| 33 | Australia | 10 2004 | 150 | 37 | 24.7 | 10 2004 | 76 | 27 | 35.5 |
| 34 | Singapore | 05 2006 | 94 | 23 | 24.5 | --- | --- | --- | --- |
| 35 | Liechtenstein | 03 2005 | 25 | 6 | 24.0 | --- | --- | --- | --- |

| | | | | | | | | | |
|----|--------------------------------|---------|------|-----|------|---------|-----|-----|------|
| 36 | Lesotho | 02 2007 | 119 | 28 | 23.5 | 03 2007 | 33 | 10 | 30.3 |
| " | Seychelles | 05 2007 | 34 | 8 | 23.5 | --- | --- | --- | --- |
| 37 | Honduras | 11 2005 | 128 | 30 | 23.4 | --- | --- | --- | --- |
| 38 | Luxembourg | 06 2004 | 60 | 14 | 23.3 | --- | --- | --- | --- |
| 39 | Tunisia | 10 2004 | 189 | 43 | 22.8 | 07 2005 | 112 | 15 | 13.4 |
| 40 | Mexico | 07 2006 | 500 | 113 | 22.6 | 07 2006 | 128 | 22 | 17.2 |
| 41 | United Arab Emirates | 12 2006 | 40 | 9 | 22.5 | --- | --- | --- | --- |
| 42 | Philippines | 05 2007 | 237 | 53 | 22.4 | 05 2007 | 23 | 4 | 17.4 |
| 43 | Bulgaria | 06 2005 | 240 | 53 | 22.1 | --- | --- | --- | --- |
| 44 | Eritrea | 02 1994 | 150 | 33 | 22.0 | --- | --- | --- | --- |
| " | Senegal | 06 2007 | 150 | 33 | 22.0 | 08 2007 | 100 | 40 | 40.0 |
| 45 | Ethiopia | 05 2005 | 529 | 116 | 21.9 | 10 2005 | 112 | 21 | 18.8 |
| 46 | Estonia | 03 2007 | 101 | 22 | 21.8 | --- | --- | --- | --- |
| " | Republic of Moldova | 03 2005 | 101 | 22 | 21.8 | --- | --- | --- | --- |
| 47 | Croatia | 11 2003 | 152 | 33 | 21.7 | --- | --- | --- | --- |
| 48 | Pakistan | 10 2002 | 342 | 73 | 21.3 | 03 2006 | 100 | 17 | 17.0 |
| " | Portugal | 02 2005 | 230 | 49 | 21.3 | --- | --- | --- | --- |
| 49 | Canada | 01 2006 | 308 | 64 | 20.8 | N.A. | 100 | 35 | 35.0 |
| " | Monaco | 02 2003 | 24 | 5 | 20.8 | --- | --- | --- | --- |
| 50 | Poland | 10 2007 | 460 | 94 | 20.4 | 10 2007 | 100 | 8 | 8.0 |
| " | Serbia | 01 2007 | 250 | 51 | 20.4 | --- | --- | --- | --- |
| 51 | China | 02 2003 | 2980 | 604 | 20.3 | --- | --- | --- | --- |
| 52 | Dem. People's Rep. of Korea | 08 2003 | 687 | 138 | 20.1 | --- | --- | --- | --- |
| 53 | Dominican Republic | 05 2006 | 178 | 35 | 19.7 | 05 2006 | 32 | 1 | 3.1 |
| " | United Kingdom | 05 2005 | 646 | 127 | 19.7 | N.A. | 751 | 142 | 18.9 |
| 54 | Trinidad and Tobago | 10 2002 | 36 | 7 | 19.4 | 10 2002 | 31 | 10 | 32.3 |
| 55 | Guinea | 06 2002 | 114 | 22 | 19.3 | --- | --- | --- | --- |
| " | Slovakia | 06 2006 | 150 | 29 | 19.3 | --- | --- | --- | --- |
| 56 | Latvia | 10 2006 | 100 | 19 | 19.0 | --- | --- | --- | --- |
| 57 | Venezuela | 12 2005 | 167 | 31 | 18.6 | --- | --- | --- | --- |
| 58 | France | 06 2007 | 577 | 107 | 18.5 | 09 2004 | 331 | 56 | 16.9 |
| " | Nicaragua | 11 2006 | 92 | 17 | 18.5 | --- | --- | --- | --- |
| 59 | Saint Vincent & the Grenadines | 12 2005 | 22 | 4 | 18.2 | --- | --- | --- | --- |
| 60 | Sudan | 08 2005 | 436 | 79 | 18.1 | 08 2005 | 50 | 2 | 4.0 |
| 61 | Equatorial Guinea | 04 2004 | 100 | 18 | 18.0 | --- | --- | --- | --- |
| 62 | Mauritania | 11 2006 | 95 | 17 | 17.9 | 01 2007 | 56 | 10 | 17.9 |
| 63 | Tajikistan | 02 2005 | 63 | 11 | 17.5 | 03 2005 | 34 | 8 | 23.5 |
| " | Uzbekistan | 12 2004 | 120 | 21 | 17.5 | 01 2005 | 100 | 15 | 15.0 |
| 64 | Italy | 04 2006 | 630 | 109 | 17.3 | 04 2006 | 322 | 44 | 13.7 |
| " | Nepal | 01 2007 | 329 | 57 | 17.3 | --- | --- | --- | --- |
| 65 | Mauritius | 07 2005 | 70 | 12 | 17.1 | --- | --- | --- | --- |
| 66 | Bolivia | 12 2005 | 130 | 22 | 16.9 | 12 2005 | 27 | 1 | 3.7 |

| | | | | | | | | | |
|----|--------------------------|---------|-----|----|------|---------|-----|-----|------|
| 67 | El Salvador | 03 2006 | 84 | 14 | 16.7 | --- | --- | --- | --- |
| " | Panama | 05 2004 | 78 | 13 | 16.7 | --- | --- | --- | --- |
| " | Zimbabwe | 03 2005 | 150 | 25 | 16.7 | 11 2005 | 66 | 23 | 34.8 |
| 68 | United States of America | 11 2006 | 435 | 71 | 16.3 | 11 2006 | 100 | 16 | 16.0 |
| 69 | Greece | 09 2007 | 300 | 48 | 16.0 | --- | --- | --- | --- |
| " | Turkmenistan | 12 2004 | 50 | 8 | 16.0 | --- | --- | --- | --- |
| 70 | Kazakhstan | 08 2007 | 107 | 17 | 15.9 | 08 2005 | 47 | 2 | 4.3 |
| 71 | Czech Republic | 06 2006 | 200 | 31 | 15.5 | 10 2006 | 81 | 12 | 14.8 |
| 72 | Burkina Faso | 05 2007 | 111 | 17 | 15.3 | --- | --- | --- | --- |
| " | Cape Verde | 01 2006 | 72 | 11 | 15.3 | --- | --- | --- | --- |
| 73 | Bangladesh ² | 10 2001 | 345 | 52 | 15.1 | --- | --- | --- | --- |
| 74 | Angola | 09 1992 | 220 | 33 | 15.0 | --- | --- | --- | --- |
| " | Chile | 12 2005 | 120 | 18 | 15.0 | 12 2005 | 38 | 2 | 5.3 |
| 75 | Zambia | 09 2006 | 157 | 23 | 14.6 | --- | --- | --- | --- |
| 76 | Bosnia and Herzegovina | 10 2006 | 42 | 6 | 14.3 | 03 2007 | 15 | 2 | 13.3 |
| " | Cyprus | 05 2006 | 56 | 8 | 14.3 | --- | --- | --- | --- |
| 77 | Israel | 03 2006 | 120 | 17 | 14.2 | --- | --- | --- | --- |
| 78 | Cameroon | 07 2007 | 163 | 23 | 14.1 | --- | --- | --- | --- |
| 79 | Guinea-Bissau | 03 2004 | 100 | 14 | 14.0 | --- | --- | --- | --- |
| 80 | Malawi | 04 2004 | 191 | 26 | 13.6 | --- | --- | --- | --- |
| 81 | Republic of Korea | 04 2004 | 299 | 40 | 13.4 | --- | --- | --- | --- |
| 82 | Barbados | 05 2003 | 30 | 4 | 13.3 | 05 2003 | 21 | 5 | 23.8 |
| " | Ireland | 05 2007 | 166 | 22 | 13.3 | 07 2007 | 49 | 9 | 18.4 |
| " | Jamaica | 09 2007 | 60 | 8 | 13.3 | 09 2007 | 21 | 3 | 14.3 |
| 83 | Dominica | 05 2005 | 31 | 4 | 12.9 | --- | --- | --- | --- |
| " | Sierra Leone | 08 2007 | 124 | 16 | 12.9 | --- | --- | --- | --- |
| 84 | Gabon | 12 2006 | 120 | 15 | 12.5 | 02 2003 | 91 | 14 | 15.4 |
| " | Liberia | 10 2005 | 64 | 8 | 12.5 | 10 2005 | 30 | 5 | 16.7 |
| 85 | Niger | 11 2004 | 113 | 14 | 12.4 | --- | --- | --- | --- |
| 86 | Bahamas | 05 2007 | 41 | 5 | 12.2 | 05 2007 | 15 | 8 | 53.3 |
| " | Slovenia | 10 2004 | 90 | 11 | 12.2 | 12.2002 | 40 | 3 | 7.5 |
| 87 | Guatemala | 09 2007 | 158 | 19 | 12.0 | --- | --- | --- | --- |
| " | Maldives | 01 2005 | 50 | 6 | 12.0 | --- | --- | --- | --- |
| " | Syrian Arab Republic | 04 2007 | 250 | 30 | 12.0 | --- | --- | --- | --- |
| 88 | San Marino | 06 2006 | 60 | 7 | 11.7 | --- | --- | --- | --- |
| 89 | Azerbaijan | 11 2005 | 124 | 14 | 11.3 | --- | --- | --- | --- |
| " | Indonesia | 04 2004 | 550 | 62 | 11.3 | --- | --- | --- | --- |
| 90 | Romania | 11 2004 | 331 | 37 | 11.2 | 11 2004 | 137 | 13 | 9.5 |
| 91 | Botswana | 10 2004 | 63 | 7 | 11.1 | --- | --- | --- | --- |
| " | Uruguay | 10 2004 | 99 | 11 | 11.1 | 10 2004 | 31 | 3 | 9.7 |
| 92 | Ghana | 12 2004 | 230 | 25 | 10.9 | --- | --- | --- | --- |
| 93 | Djibouti | 01 2003 | 65 | 7 | 10.8 | --- | --- | --- | --- |
| " | Swaziland | 10 2003 | 65 | 7 | 10.8 | 10 2003 | 30 | 9 | 30.0 |

| | | | | | | | | | |
|-----|----------------------------|---------|-----|----|------|---------|-----|-----|------|
| 94 | Antigua and Barbuda | 03 2004 | 19 | 2 | 10.5 | 03 2004 | 17 | 3 | 17.6 |
| " | Central African Republic | 05 2005 | 105 | 11 | 10.5 | --- | --- | --- | --- |
| " | Morocco | 09 2007 | 325 | 34 | 10.5 | 09 2006 | 270 | 3 | 1.1 |
| 95 | Hungary | 04 2006 | 386 | 40 | 10.4 | --- | --- | --- | --- |
| 96 | Mali | 07 2007 | 147 | 15 | 10.2 | --- | --- | --- | --- |
| 97 | Paraguay | 04 2003 | 80 | 8 | 10.0 | 04 2003 | 45 | 4 | 8.9 |
| 98 | Cambodia | 07 2003 | 123 | 12 | 9.8 | 01 2006 | 61 | 9 | 14.8 |
| " | Russian Federation | 12 2003 | 447 | 44 | 9.8 | N.A. | 178 | 6 | 3.4 |
| 99 | Gambia | 01 2007 | 53 | 5 | 9.4 | --- | --- | --- | --- |
| " | Georgia | 03 2004 | 235 | 22 | 9.4 | --- | --- | --- | --- |
| " | Japan | 09 2005 | 480 | 45 | 9.4 | 07 2007 | 242 | 42 | 17.4 |
| 100 | Armenia | 05 2007 | 131 | 12 | 9.2 | --- | --- | --- | --- |
| " | Malta | 04 2003 | 65 | 6 | 9.2 | --- | --- | --- | --- |
| 101 | Malaysia | 03 2004 | 219 | 20 | 9.1 | 03 2004 | 70 | 18 | 25.7 |
| " | Turkey | 07 2007 | 549 | 50 | 9.1 | --- | --- | --- | --- |
| 102 | Brazil | 10 2006 | 513 | 45 | 8.8 | 10 2006 | 81 | 10 | 12.3 |
| 103 | Thailand | 10 2006 | 242 | 21 | 8.7 | --- | --- | --- | --- |
| 104 | Montenegro | 09 2006 | 81 | 7 | 8.6 | --- | --- | --- | --- |
| 105 | Cote d'Ivoire | 12 2000 | 223 | 19 | 8.5 | --- | --- | --- | --- |
| 106 | Benin | 03 2007 | 83 | 7 | 8.4 | --- | --- | --- | --- |
| " | Colombia | 03 2006 | 166 | 14 | 8.4 | 03 2006 | 102 | 12 | 11.8 |
| " | Dem. Republic of the Congo | 07 2006 | 500 | 42 | 8.4 | 01 2007 | 108 | 5 | 4.6 |
| 107 | India | 04 2004 | 545 | 45 | 8.3 | 07.2006 | 242 | 26 | 10.7 |
| 108 | Somalia | 08 2004 | 256 | 21 | 8.2 | --- | --- | --- | --- |
| 109 | Madagascar | 09 2007 | 125 | 10 | 8.0 | 03 2001 | 90 | 10 | 11.1 |
| 110 | Algeria | 05 2007 | 389 | 30 | 7.7 | 12 2006 | 129 | 4 | 3.1 |
| " | Libyan Arab Jamahiriya | 03 2006 | 468 | 36 | 7.7 | --- | --- | --- | --- |
| 111 | Congo | 06 2007 | 135 | 10 | 7.4 | 10 2005 | 60 | 8 | 13.3 |
| " | Togo | 10 2007 | 81 | 6 | 7.4 | --- | --- | --- | --- |
| 112 | Kenya | 12 2002 | 219 | 16 | 7.3 | --- | --- | --- | --- |
| 113 | Albania | 07 2005 | 140 | 10 | 7.1 | --- | --- | --- | --- |
| 114 | Nigeria | 04 2007 | 358 | 25 | 7.0 | 04 2007 | 109 | 9 | 8.3 |
| 115 | Belize | 03 2003 | 30 | 2 | 6.7 | 03 2003 | 12 | 3 | 25.0 |
| " | Saint Kitts and Nevis | 10 2004 | 15 | 1 | 6.7 | --- | --- | --- | --- |
| 116 | Mongolia | 06 2004 | 76 | 5 | 6.6 | --- | --- | --- | --- |
| 117 | Chad | 04 2002 | 155 | 10 | 6.5 | --- | --- | --- | --- |
| 118 | Samoa | 03 2006 | 49 | 3 | 6.1 | --- | --- | --- | --- |
| 119 | Saint-Lucia ³ | 12 2006 | 18 | 1 | 5.6 | 01 2007 | 11 | 2 | 18.2 |
| 120 | Jordan | 06 2003 | 110 | 6 | 5.5 | 11 2005 | 55 | 7 | 12.7 |
| 121 | Sri Lanka | 04 2004 | 225 | 11 | 4.9 | --- | --- | --- | --- |
| 122 | Lebanon | 05 2005 | 128 | 6 | 4.7 | --- | --- | --- | --- |
| 123 | Kiribati | 08 2007 | 46 | 2 | 4.3 | --- | --- | --- | --- |

| | | | | | | | | | |
|-----|------------------------------------|---------|-----|----|-----|---------|-----|-----|------|
| 124 | Haiti | 02 2006 | 98 | 4 | 4.1 | 02 2006 | 30 | 4 | 13.3 |
| " | Iran (Islamic Rep. of) | 02 2004 | 290 | 12 | 4.1 | --- | --- | --- | --- |
| 125 | Vanuatu | 07 2004 | 52 | 2 | 3.8 | --- | --- | --- | --- |
| 126 | Tonga | 03 2005 | 30 | 1 | 3.3 | --- | --- | --- | --- |
| 127 | Comoros | 04 2004 | 33 | 1 | 3.0 | --- | --- | --- | --- |
| " | Marshall Islands | 11 2003 | 33 | 1 | 3.0 | --- | --- | --- | --- |
| 128 | Bhutan | N.A. | 150 | 4 | 2.7 | --- | --- | --- | --- |
| 129 | Bahrain | 11 2006 | 40 | 1 | 2.5 | 12 2006 | 40 | 10 | 25.0 |
| 130 | Egypt | 11 2005 | 442 | 9 | 2.0 | 06 2007 | 264 | ? | ? |
| 131 | Sao Tome and Principe ⁴ | 03 2006 | 55 | 1 | 1.8 | --- | --- | --- | --- |
| 132 | Kuwait ⁵ | 06 2006 | 65 | 1 | 1.5 | --- | --- | --- | --- |
| 133 | Papua New Guinea | 06 2007 | 109 | 1 | 0.9 | --- | --- | --- | --- |
| 134 | Yemen | 04 2003 | 301 | 1 | 0.3 | 04 2001 | 111 | 2 | 1.8 |
| 135 | Kyrgyzstan | 02 2005 | 72 | 0 | 0.0 | --- | --- | --- | --- |
| " | Micronesia (Fed. States of) | 03 2005 | 14 | 0 | 0.0 | --- | --- | --- | --- |
| " | Oman | 10 2007 | 84 | 0 | 0.0 | N.A. | 58 | 9 | 15.5 |
| " | Palau | 11 2004 | 16 | 0 | 0.0 | 11 2004 | 9 | 0 | 0.0 |
| " | Qatar | 06 2005 | 35 | 0 | 0.0 | --- | --- | --- | --- |
| " | Saudi Arabia | 04 2005 | 150 | 0 | 0.0 | --- | --- | --- | --- |
| " | Solomon Islands | 04 2006 | 50 | 0 | 0.0 | --- | --- | --- | --- |
| " | Tuvalu | 08 2006 | 15 | 0 | 0.0 | --- | --- | --- | --- |
| 136 | Argentina | 10 2007 | 257 | ? | ? | 10 2007 | 72 | ? | ? |
| " | Nauru | 08 2007 | 18 | ? | ? | --- | --- | --- | --- |
| " | Ukraine | 09 2007 | 450 | ? | ? | --- | --- | --- | --- |

* Figures correspond to the number of seats currently filled in Parliament

1 - South Africa: The figures on the distribution of seats do not include the 36 special rotating delegates appointed on an ad hoc basis, and all percentages given are therefore calculated on the basis of the 54 permanent seats.

2 - Bangladesh: In 2004, the number of seats in parliament was raised from 300 to 345, with the addition of 45 reserved seats for women. These reserved seats were filled in September and October 2005, being allocated to political parties in proportion to their share of the national vote received in the 2001 election.

3 - Sainte-Lucia: No woman was elected in the 2006 elections. However one woman was appointed Speaker of the House and therefore became a member of the House.

4 - Kuwait: No woman candidate was elected in the 2006 elections. One woman was appointed to the 16-member cabinet sworn in in July 2006. A new cabinet sworn in in March 2007 included two women. As cabinet ministers also sit in parliament, there are two women out of a total of 65 members. One female minister resigned in August 2007, bringing the number of women to one.

5 - Sao Tome and Principe: Four women were elected on 26 March 2006. However, after the formation of the new government on 21 April 2006, the total number of women parliamentarians decreased to one (1.82 per cent).